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관련 정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및 작성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 중 “사고기록의 기록내용을”을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결과보고서(법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분석한 경우에 한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기준은 별지 제17호의5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 분석 결과보고서

자동차 및 사고 정보	차명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 발생 개요	사고 횟수 예시) 3회									

사고기록 주요내용	사고 구분 예시) 1번 사고										사고 간격	
	1. 사고 이전 차량 정보											
	시간(초)	차량속도 (km/h)	제동페달 작동여부	마스터실 린더 제동압력 또는 휠 실린더 제동압력 (bar)	조향핸들 각도 (deg)	엔진스로 틀 회전량 (%)	가속페달 변위량 (%)	엔진 또는 모터 회전수 (rpm)	바퀴잡김 방지장치 동작여부(ABS) 작동여부	자동차안 정성제어 장치(ESC) 작동여부	구동력제 어장치(ITS) 작동여부	
	-5.0											
	...											
	0											
2. 사고 시점의 에어백시스템 정보												
에어백 작동 정면(운전석[] 조수석[]) 측면(운전석[] 조수석[]) 커튼(운전석[] 조수석[]) 기타(운전석[] 조수석[] 센터[] 보행자[])							에어백 또는 보행자 보호 시스템 경고등 점등 여부 예[] 아니오[]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운전석[] 조수석[] 조수석 중앙[]					
3. 사고 이전 첨단안전자보조기능 작동 정보												
시간(초)	정속주행제어장치(OC) 또는 능동형정속주행제어장치(AOC) 작동여부	비상제동장치(AEB) 작동여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작동여부	수정조향기능(CSF) 작동 상태	비상조향기능(ESF) 작동 상태	자동명령조향기능(A~C) 작동상태						
-5.0												
...												
0												

분석결과	
------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 결과보고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귀하

유의사항	
1.	기록내용의 단위 및 기록내용에 대해 국문으로 작성합니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고” 별로 주요 사고기록을 작성합니다.
3.	“정상 기록완료 여부”와 관련하여 ‘추출불가’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사고기록 주요내용에 속한 기록항목 관련 설계된 장치 또는 센서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기록시점에 작동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하고, 기록되는 경우 기록된 내용 그대로 표기합니다.
5.	에어백 작동과 관련한 예시로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은 ‘기타, 운전석’, 센터사이드 에어백은 ‘기타, 센터’, 보행자보호에어백은 ‘기타, 보행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	“분석결과”란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서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①·② (생략)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u>사고기록의 기록내용을</u>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 ----- ----- ----- ----- ----- <u>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결과보고서(법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분석한 경우에 한한다)</u> 를----- -----.
<u><신설></u>	④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기준은 별지 제17호의5 서식에 따른다.